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대점입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日本における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大店立地法)の制定について



번역 : 류시균



교바야카와 사토루(小早川 悟)

I. 서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는 도심부에서의 불법주차문제와 교통혼잡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는 노상주차대책, 교통혼잡대책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전개해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도심부 상점가에서는 중소형 소매상점가의 쇠퇴가 시작된 반면 대형 쇼핑센터와 쇼핑몰 건설이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들 대형 쇼핑센터들은 도심뿐만 아니라 교외로도 진출, 도심 공동화와 교외지역에서의 교통혼잡 및 소음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2000년 6월 1일 지금까지 운용되던 대규모소매점포법(이하 대점법)을 대신해서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이하 대점입지법)을 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대형점 입지에 따른 주변교통체계에 대한 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배려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점입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과 운용방법에 대해서 개관해 보고자 한다.

II. 점포입지에 따른 교통문제¹⁾

지금까지 도심의 기존 상업지역에서는 교통혼잡과 주차장부족 등 다양한

小早川 悟 : 日本大学 理工学部 社会交通工学科 専任講師, kobaya@trpt.cst.nihon-u.ac.jp, Tel & Fax:047-469-5242
 류시균 :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 ryu@gri.re.kr, 직장전화:031-250-3282, 직장전화:031-250-3113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어 왔다.

- ① 노상주차수요가 많아 상품의 반입반출 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이중, 삼중으로 주차한 차량에서의 화물취급활동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② 기본적으로 조업주차공간이 노외, 노상 모두 부족하다.
- ③ 노외주차장이 공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차량 등의 보관장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차고법), 부설의무주차조례 등, 주차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해 왔다. 그러나 차고법을 제외한 주차관련 법들은 주로 도심지역의 주차장 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교외지역에서의 주차문제를 고려한 것들은 아니었다. 그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도심 활성화 문제와 주거지역내 대형점입지로 인한 교통·소음·도로변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적 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져 갔다. 이에 일본정부는 대규모 점포로 인해서 야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을 대신해서 대규모점포입지법(대점입지법)을 제정하였다.

Ⅲ. 대점법에서 대점입지법으로

표1은 대점입지법 시행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1974년 대형점의 입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점법을 제정하였으나 교외지역에서의 대형점 개발에 따른 교통·소음·도로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대점법을 폐지하고 대점입지법을 대체입법하였다.

〈표 1〉 대점입지법 시행까지의 과정²⁾

연월	개요
1974년 3월	대점법시행, 백화점법 폐지, 규제강화
1979년 5월	대점법 개정, 제2종 대형점을 정의, 규제강화
1982년 2월	통산성의 행정지도에 의한 출점규제, 규제강화를 위한 대점법의 신 운용
1984년 4월	출점규제조치의 계속, 규제강화
1989년 11월	미일구조협약에서 미국이 대점법 완화를 강하게 요청(외압)
1991년 12월	미국 토이자러스, 일본진출
1992년 1월	개정 대점법 시행, 출점규제지역을 폐지(규제완화)
1994년 5월	대점법의 운용기준 재검토(규제완화)
1997년 3월	통산성, 대점법의 출점수속 간소화(규제완화)
1998년 6월	대점입지법 공포
2000년 6월	대점입지법 시행
2005년 3월	대점입지법의 개정(피크올 등의 재검토)

원칙적으로 대점법은 대규모 점포의 개점으로 인해 당해 지역의 상점가와 중소 소매상의 영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점일, 점포면적, 개점시간, 휴업일 등의 사항을 당해 지역의 중소점포와 조정해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당해 지역의 중소점포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 요소가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압에 의해서 생성된 규제완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과 대형점포의 교외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 발생으로 대점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 ① 대점법으로는 대형점의 입지에 따른 교통혼잡, 쓰레기문제 등 생활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 ② 경제구조개혁,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대점법에 의한 출점규제는 한계가 있다.
- ③ 대형과 중소형의 공존, 연합을 통한 집적(集積) 전체의 매력도 제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형점 대 중소상점이라고 하는 대립으로부터 공존공영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경제적 규제장치였던 대점법에서 환경적 규제를 중시한 대점입지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표 2〉는 대점법과 대점입지법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대점입지법에는 대점법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던 주차장의 수용대수와 조업시설, 차량 및 방

〈표 2〉 대점법과 대점입지법의 차이³⁾

	대점법	대점입지법
민원주체	건물설치자(소유자) 3조 서류 소매업자5조 서류	건물설치자(소유자)
대상점포	소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소매업을 하는 점포
대상면적	500 m2초과	1,000 m2초과
서류사항	○건물설치자(3조 서류) 개점일 점포면적 ○소매업자(5조 서류) 개점일 점포면적 폐점시각 휴업일수	1. 점포의 명칭 및 소재지 2. 점포설치자 및 소매업자의 명칭(성명)과 주소 3. 개점일 4. 점포면적 5. 주차장의 위치 및 수용대수 6. 주류장의 위치 및 수용대수 7. 조업시설의 위치 및 면적 8. 폐기물 등의 보관시설의 위치 및 용량 9. 개점시각 및 폐점시각 10.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시간 11. 주차장 출입구의 수와 위치 12. 조업시간대
첨부서류	○건물설치자(3조 서류) 등기부등본 건물배치도, 각층평면도 점포 주변도 ○소매업자(5조 서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회사인 경우) 판매물품 일람 점포 배치도	1. 등기부등본 2. 주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3. 건물의 위치 및 건물내 소매점 배치도면 4. 방문객 자동차대수 등의 예측 및 산출근거 5. 주차장 출입구의 수 및 위치 6. 방문객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경로 및 방법 7. 조업시설의 자동차대수 및 조업시간대 8. 차음벽의 위치 및 높이를 표시한 도면 9. 냉각탑, 냉난방시설의 옥외시설의 수 또는 송풍기의 가동시간대와 위치도 10.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등가소음레벨의 예측결과 및 산출근거 11. 야간에 있어서의 소음발생원과 소음 레벨 최대값의 예측결과 및 산출근거 12. 폐기물 등의 배출량 예측결과 및 산출근거
심사내용	점포주변 중소소매업자의 사업활동 기회의 걱정 확보	점포주변의 생활환경 보호
심사기관 (서류수신)	제1종 (300 m2초과) : 국가 제2종 : 현	현
서류제출	현 (제1종인 경우에는 현을 경유해서 국가)	현
강제력	있음(명령, 영업정지)	없음

문객의 진출입동선, 나아가서는 소음이나 폐기물 등의 시설까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 대형소매점포의 입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Ⅳ. 대점입지법의 개요⁴⁾

대점입지법의 목적은 대규모 소매점포의 입지(출점)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지체, 소음, 쓰레기처리 등의 영향을 심사하고 그 주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적정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배려, 조치를 사업자(출점자)에게 요구하는 데 있다. 대점입지법에 명시된 사업자가 배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시설의 배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 ① 대형점의 개점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② 대점입지법이 정한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의견에 따라 생활환경상의 문제점을 해소 또는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대점입지법이 정한 수속 중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 ⑤ 점포의 개점 또는 시설변경 이후에도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사·예측 결과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특히 연말이나 세일기간 등) 대응전략이 현저하게 미약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으로는

- ① 주차수요의 충족 등, 교통에 관한 사항(주차장의 필요대수,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 주차장의 확보, 조업시설의 정비, 경로시설 등)

- ②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확보
- ③ 폐기물의 감량화 및 리사이클에 대한 고려
- ④ 방재대책에 대한 협력
- ⑤ 소음발생에 관한 사항(대응책, 예측, 평가방법 등)
- ⑥ 폐기물에 관한 사항(보관, 운반, 처리 등)
- ⑦ 가로환경 정비 등에 대한 배려

여기서 교통부문에 한정해서 대점입지법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대점입지법은 주변도로의 혼잡도조사를 토대로 대규모 점포의 출점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차량 및 방문객의 적절한 진출입 경로와 인접지역 교통혼잡 완화 방안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연말이나 세일 기간처럼 방문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점입지법은 대규모 소매점포의 개발로 인한 교통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점법은 단순히 개점시간이나 출점 자체를 규제하였으나 대점입지법은 대규모점포가 건설되는 주변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교통, 소음 등의 다양한 항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 대점입지법의 문제점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대점입지법은 대점법에 비해서 주변지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고, 그 내용은 교통운용에 관한 것에서부터 소음대책, 가로환경정비 등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점입지법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점입지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을 뿐 권고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이나 제재에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교통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주차대수나 경로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교통량이나 교통용량 등을 조사해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업자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통처리가 곤란한 장소에서 당해 지역의 지자체나 경찰과의 연계가 불투명한 점도 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개점 이후에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처럼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Ⅵ. 결론

대점입지법은 환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형점포의 출점을 심사한다고 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대점입지법은 2000 년도에 제정된 이후 현실에 맞도록 조금씩 개정(2005년 1일 방문대수나 피크울 등의 내용이 개정됨)되어 왔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의 축적 과 대형점포의 개점 전후의 상세 조사를 통해서 보다 양호한 지역환경 창조 를 위한 제도로 진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高田邦道：大都市商業地における駐車問題とその解決策、国際交通安全学会誌、Vol.12、No.2、1986
2. 田善博：まちづくりへの変革—大店立地法、日本消費経済学会年報、第22集、2000
3. 島根県経営支援課HP：大店法と大店立地法の違い、
<http://www2.pref.shimane.jp/keiei/daiten/hikaku.htm>
4. 経済産業省：大規模小売店舗を設置する者が配慮すべき事項に関する指針、
経済産業省告知第85号

日本における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大店立地法) の制定について

小早川 悟

Ⅰ.はじめに

1980年代後半から1990年代にかけての日本では、都心部における違法駐車や交通混雑が大きな問題となっており、路上駐車対策や交通渋滞対策など様々な政策が展開され

できたが、根本的な解決にまでは至らないままであった。そのような中、都心部の商店街では、中小の小売商店街の衰退が止まり、それに代わって、大型の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やショッピングモールが多く建設されていった。そして、これらの大型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は、都心部だけでなく郊外にまで進出するようになり、都心部の空洞化や交通渋滞・騒音問題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問題を引き起こす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問題に対応するために、2000年6月1日にそれまでの大規模小売店舗法（以下、大店法）に代わり、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以下、大店立地法）が施行された。本稿では、大型店が立地する際の周辺交通への影響評価とその配慮という観点から、日本における大店立地法が制定されるまでの背景とその運用方法についての概説を行うこととする。

II. 店舗の立地に伴う交通問題¹⁾

これまで、既存の商業地においては、交通渋滞や駐車場不足など様々な交通問題を抱えており、特に駐車問題に関しては、次のようなことが指摘されてきた。

- ① 路上駐車需要が多く、商品の搬入出などの活動を阻害している。特に、二重、三重駐車による荷さばき活動は、交通流を阻害するとともに安全性においても問題がある。
- ② 基本的に荷さばき用駐車スペースが路外、路上ともに不足している。
- ③ 路外駐車場の配置に偏りがある。そして、ビルによっては駐車場を保有しているが、十分に活用されていないケースも多い。

このような問題の対策として、日本では都市計画法、駐車場法、道路交通法、車両等の保管場所等に関する法律（通称：車庫法）、付置義務駐車条例など様々な駐車に関する法律が制定および改正されてきている。しかし、これらの法律は、車庫法を除いては、主に都心部における駐車場整備を中心に定められたものであり、郊外における駐車政策を視野に入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そのため、1990年代以降は、中心市街地活性化の問題や住宅地における大型店立地に伴う交通渋滞、騒音問題、沿道環境問題という新しい問題に対応できる法律が存在しておらず、大きな問題を引き起こすこととなった。そこで、これまで存在していた大規模小売店舗法（大店法）に代わって、大規模店舗立地法（大店立地法）を制定することで、大型店の

立地に伴う新しい問題に対応できるようになった。

III. 大店法から大店立地法へ

表 1 は、大店立地法施行までの流れを整理したものである。大型店の立地に伴う問題に対応する法律としては、大店法が1974年から運用されていた。しかし、郊外部における大型店の出店に伴う交通渋滞、騒音問題、沿道環境問題に対応するために、大店法が廃止され大店立地法が施行されるようになった。

もともと、大店法は、大規模店舗が出店を行う際に、地元の商店街や中小の小売店の営業に影響が出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開店日、店舗面積、開店時間、休業日などの項目を地元の中小的店舗と調整することとなっていた。これは、地元の中小的店舗の保護するための経済的規制の要素が強いものであった。しかし、外圧による規制緩和をめぐる大きな流れと大型店舗の郊外化による新たな問題が発生するにしたがって、大店法における次のような問題点が明らかになっていった。その問題を整理すると

- ① 大店法では大型店の立地に伴う交通渋滞、ゴミ問題等の生活環境の問題に対応できない

〈表 1〉大店立地法施行までの流れ²⁾

年月	概要
1974年3月	大店法施行, 百貨店法を廃止 (現制発行)
1979年5月	大店法改正, 第2種大型店を定義 (現制発行)
1982年2月	通産省の行政指導による出店規制 (現制発行に向け大店法を新運用)
1984年4月	出店規制措置の継続 (現制発行)
1989年11月	日米構造協議で米が大店法 緩和を強く要請 (外圧)
1991年12月	米トイザラス, 日本進出
1992年1月	改正大店法施行, 出店規制地域を廃止 (現制緩和)
1994年5月	大店法の運用基準見直し (現制緩和)
1997年3月	通産省, 大店法の出店手続きを簡素化 (現制緩和)
1998年6月	大店立地法の 公布
2000年6月	大店立地法の 施行
2005年3月	大店立地法の 改正 (ピーク率等の見直し)

- ② 經濟構造改革、規制緩和の流れの中で、大店法による出店規制には限界がある
- ③ 大と中小の共存、組合せによる集積全体の魅力を競うような状況が増える中で、大型店対中小商店という対立から共存共栄への変化に対応できていない

といったような点が挙げられていた。このような背景の中で、經濟的規制であった大店法から環境的規制を重視した大店立地法の制定が行われた。

表 2 は、大店法と大店立地法の違いを整理したものである。大店立地法では、大店法で検討されていなかった駐車場の収容台数や荷さばき施設、車両および訪問者の出入り経路、さらには騒音や廃棄物等の施設にまで検討が必要とされ、大型小売店舗の立地が周辺地区の生活環境を保護しつつ適正に行われて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手続きが定められた。

IV. 大店立地法の概要⁴⁾

大店立地法の目的は、大規模小売店舗の立地(出店)に関して、交通渋滞・騒音・ゴミ処理等の影響を審査してその周辺の地域社会の生活環境を適正に保持する

〈表 2〉 大店法と大店立地法の違い³⁾

	大店法	大店立地法
届出者	建物設置者 所有者) 3条届出 小売業者 5条届出	建物設置者 所有者)
対象店舗	小売業を営む店舗	小売業を行う店舗
基準面積	500㎡超	1,000㎡超
届出事項	○建物設置者 (3条届出) 開店日 店舗面積 ○小売業者 (6条届出) 店舗面積 開店日 閉店時刻 休業日数	1 店舗の名称及び所在地 2 店舗設置者及び小売業者の名称(氏名)及び住所 3 開店日 4 店舗面積 5 駐車場の位置及び収容台数 6 駐輪場の位置及び収容台数 7 荷さばき施設の位置及び面積 8 廃棄物等の保管施設の位置及び容量 9 開店時刻及び閉店時刻 10 乗客の駐車場の利用時間 11 駐車場の出入口の数及び位置 12 荷さばきの時間帯
添付書類	○建物設置者 (3条届出) 登記簿謄本 建物配置図、各階平面図 店舗周辺図 ○小売業者 (6条届出) 登記簿謄本 株主名簿(株式会社のみ) 販売物品一覧 店舗配置図	1 登記簿謄本 住民票 2 主として販売する物品の種類 3 建物の位置及びその建物内の小売配置図面 4 乗客自動車台数等の予測及び算出根拠 5 駐車場の出入り口の数及び位置設定 6 乗客の自動車を駐車場に誘導する経路及び方法 7 荷さばき施設の自動車台数及び荷捌きの時間帯 8 遮音壁の位置及び高さを示す図面 9 冷却塔、冷暖房設備の室外機又は送風機の稼働時間 帯及び位置図 10 平均的な状況を呈する日における等価騒音レベルの予測結果及びその算出根拠 11 夜間における騒音の発生源ごとの騒音レベルの最大値の予測の結果及びその算出結果 12 廃棄物等の排出量等の予測の結果及びその算出根拠
審査内容	店舗周辺の中小小売業者の事業活動の機会の適正な確保	店舗周辺の生活環境の保持
審査機関	第1種 (3000㎡以上) 国 第2種 県	県
届出提出先	県 第1種(国あて県経由)	県
強制力	あり(命令、営業停止)	なし

ための配慮・措置を出店者に求めるものである。大店立地法のなかで明記されている配慮すべき事項は、「配慮すべき基本的」と「施設の配置及び運営方法に関する事項」の大きく2つ分けられる。「配慮すべき基本的事項」としては、次のような点が挙げられている。

- ① 立地に伴う周辺の地域の生活環境への影響については、予め十分な調査・予測を行い、適切な対応を行うことが必要である
- ② 大店立地法の定める説明会においては、地域住民への適切な説明を行うことが重要である
- ③ 関係機関からの意見に対しては、その意見の背景となった生活環境上の問題の解消・軽減のため合理的な処置をとるように努め、データに基づく合理的な説明を行うよう努めること
- ④ 大店立地法の定める手続きの中で講ずることとした対応策については、誠実に実効ある措置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店舗の開店あるいは施設変更の後においても、周辺の地域の生活環境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十分な注意を払い、調査・予測した結果と大きく乖離があり、(特に、年末や売出しの時期など) 対応の規模が著しく過小であった場合等には必要な措置をとるように努めることが必要である

さらに、「施設の配置及び運営方法に関する事項」としては、

- ① 駐車需要の充足等、交通に係る事項(駐車場の必要台数、駐車場の位置および構造、駐輪場の確保、荷さばき施設の整備、経路設定等)
- ② 歩行者の通行の利便の確保
- ③ 廃棄物減量化およびリサイクルについての配慮
- ④ 防災対策への協力
- ⑤ 騒音の発生に係る事項(対応策、予測・評価方法等)
- ⑥ 廃棄物に係る事項(保管、運搬・処理、等)
- ⑦ 街並みづくり等への配慮

といった項目が挙げられている。

ここで、交通部分に限定して大店立地法の意味を検討してみよう。大店立地法は

周辺道路の混雑度調査に基づいて店舗の出店による交通影響を分析し、また適切な車両および訪問者の経路と周辺地域の混雑緩和対策を含めた効果的な対応戦略を立てること、さらには年末およびセール期間のように急激に来店客が増加する場合に備えて別の措置をとることを事業者に求めている。換言すると、大店立地法は大型小売店舗の立地による交通上の影響を最小化しようとする制度的な装置と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に、大店立地法では、大店法のときのようなただ単に开店時間や出店規制を行うのではなく、大規模店舗が建設される周辺地域の環境確保のため、交通や騒音などの様々な検討項目が盛り込まれている。

V. 大店立地法の問題点

これまで述べてきたように、大店立地法は大店法に比べて、周辺地域の環境保護を目的とした法律であり、その内容は交通運用に係るものから騒音対策や街並みづくり等への配慮まで含ま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現行の大店立地法では、事業者が正当な理由なく大店立地法に従わない場合、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が規定しているが、それ以外に勧告の効力を担保するための罰則規定や制裁措置等が設けられていない状態にある。そのため、大店立地法に従わなかった場合の対処に問題が発生する恐れがある。さらに、交通運用に関しても、必要となる駐車場台数や経路等の検討は必要とされているが、実際に交通量や交通容量を調査して交通渋滞が発生しないような計画を行うことについては、事業者側によるところが大きく交通処理が困難な場所における地元の自治体や警察の連携が不透明な点が多い。また、大規模店舗が开店後に交通渋滞等の問題が起こった場合などに、その事後対策についてより詳細な検討が必要であろう。

VI. まとめ

大店立地法は、環境という視点から大型店舗の出店を審査するという今までにない法律である。大店立地法は、2000年に施行されて以来、2005年に1日当の来客数やピーク率等の改正が行われ、少しずつ現実に即したものに改正されつつあり、今

後もさらなるデータの蓄積と大型店舗の開店前後の詳細な調査を行いながら、よりよい地域環境を生み出していくための制度へと進化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

参考文献

1. 高田邦道：大都市商業地における駐車問題とその解決策、国際交通安全学会誌、Vol.12, No.2, 1986
2. 上田善博：まちづくりへの変革－大店立地法、日本消費経済学会年報、第22集、2000
3. 島根県経営支援課HP：大店法と大店立地法の違い、
<http://www2.pref.shimane.jp/keiei/daiten/hikaku.htm>
4. 経済産業省：大規模小売店舗を設置する者が配慮すべき事項に関する指針、経済産業省告知第85号